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204호

의 안 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대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의 결 일 2026. 6. 15.

주 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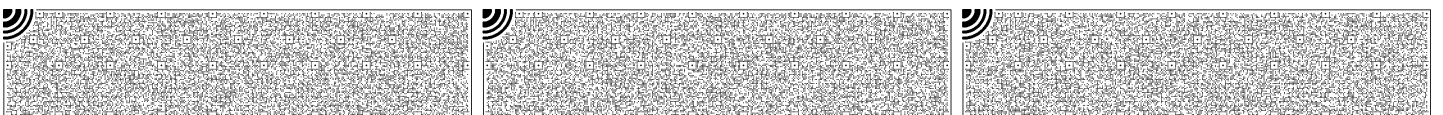
【별 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2026. 06.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일반현황	2
III. 문제점 분석	14
1. 법령상 원칙과 실제 운영 간 괴리	14
2. 야간작업의 구조적 불가피성과 관리기준 미비	16
3. 안전점검의 형식화와 실효성 부족	18
4. 민간위탁 구조에 따른 책임 분산	23
5. 휴식권·위생권 보장 미흡	24
6.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실효성 부족	28
7. 주민생활권과 종사자 보호의 구조적 충돌	30
IV. 개선방안	31
1. 안전기준 실효성 강화	31
2. 야간작업 관리체계 구축	31
3. 휴게실·샤워장 설치 운영 의무화	32
4. 대행업체 평가체계 운영기준 강화	33
5. 안전점검 체계 개선	33
6. 민간위탁 구조 개선과 책임 명확화	34
7. 원가산정 방법 개선	34
V. 조치사항	35

I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서 도시 환경 유지와 공중위생 확보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해당 업무는 도로변 작업, 중량물 취급, 폐기물·오염물 노출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고위험 직종에 해당함
-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은 청소 차량 안전장치, 보호장구 지급, 작업 인원 등 기본적인 안전기준과 점검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간작업 및 3인 1조 원칙 미준수, 안전 점검 형식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안전점검 적합판정 업체비율이 24.1%에서 84.6%로 상승하였으나, 안전사고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연 800건 이상 유지
 - 특히 야간작업은 교통혼잡 완화, 민원 대응, 처리시설 반입 시간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단기간 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야간작업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위생·휴식권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추진

II 일반현황

1. 법령 및 제도 운영체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 보호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에 안전기준 마련,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수집·운반자의 안전 기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안전기준 적용 대상과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주간작업 및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되, 조례상 예외 허용구조를 두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및 별표 21의2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과 세면·목욕 등 위생 관련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 환경부 평가지침과 지방정부 평가조례, 대행계약서가 실제 집행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 보호 관련 법령 >

구분	근거	주요 내용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안전기준 마련,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차량 안전장치, 보호장구, 주간작업, 3인 1조 원칙
산업안전보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위생 관련 일반 원칙
행정지침·조례·계약	환경부 평가지침, 지방정부 조례	대행실적 평가, 휴게실·샤워실 평가, 계약관리

2. 운영 방식과 인력 구조 실태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운영형태는 직영 56개, 용역 86개, 직영·용역 병행 80개 기관으로 확인됨
- 특히 용역업체 수는 755개, 용역근로자 수는 23,024명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핵심 운영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에서는 안전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이 지방정부의 직접 통제보다는 조례, 평가, 계약, 예산편성에 의해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현장 근로자 보호 수준은 대행업체의 자율성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공공이 설정한 기준과 감독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미화원 야간작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지방정부 222개
- 조사범위: 2022. 1. 1. ~ 2025. 6. 30.
- 조사방법: 설문지 서술형 조사(2025. 11. ~ 2026. 1.)
- 조사내용: ①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형태, ② 야간작업 여부, ③ 야간작업 사유, ④ 안전사고 인원 ⑤ 산재승인 여부 등

< 지방정부 야간작업 운영 방식과 종사자 규모 >

구분	지방정부 수	인력 규모
직영	56개	9,695명 (공무직, 기간제 등)
용역	86개	23,024명 (755개 업체 근로자)
직영 및 용역 병행	80개	직영 용역 인원수에 기포함
합계	222개	32,719명

3. 작업시간 운영 실태

- 지방정부별 작업 시간대 기준으로는 주간작업 116개, 야간작업 106개 기관으로 나타남
- 이중 야간 전용 운영이 42개, 주·야간 병행이 64개 기관으로 나타나, 야간작업은 일부 예외적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형태임이 드러남
- 특히 하절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오전 5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야간’과 ‘새벽’이 연속된 시간대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 지방정부 주간작업 및 야간작업 실태 (단위: 지방정부 수) >

합계	주간작업	야간작업		
		소계	야간 전용	야간·주간 병행
222	116	106	42	64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2026. 1.)

4. 야간작업 유지 사유

- 야간작업 사유는 교통불편 36건, 냄새·소음 등 주민불편 최소화 29건, 처리시설 반입시간 고려 26건, 업무효율성 고려 12건, 기타 30건으로 나타남
- 이는 수거업무가 단순히 업체의 작업 편의에 따라 야간으로 운영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교통체계, 주민 수면권·생활권, 처리시설 운영시간, 인력 운영 효율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임을 시사함



- 특히 지방정부 광역처리시설 반입시간이 시설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지방정부별 배출시간도 조례·규칙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수거시간의 조정은 여러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려됨

< 지방정부에서 폐기물수거 야간작업을 유지하는 이유 (단위: 지방정부 수) >

야간작업 사유	기관 수
교통 불편	36
냄새 소음 등 주민불편 최소화	29
처리시설 반입 시간 고려	26
업무 효율성 고려	12
기타(단체협약사항, 행사, 계절요인 등)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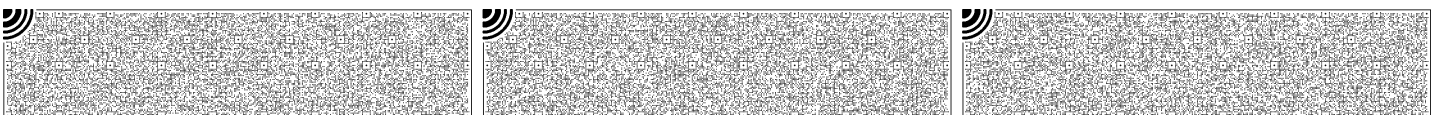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2026. 1.)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반입시간 및 배출시간 면담사례

부산광역시 광역 처리시설별 반입시간은 ▲매립시설(000쓰레기매립장)은 03:00 ~ 14:00, ▲연료화시설(0000엔이)은 00:00 ~ 12:00, ▲소각시설(0000자원에너지센터, 00자원에너지센터)은 00:00 ~ 12:00 이다.

배출시간은 각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특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거시간(반입·배출시간) 조정은 지방정부, 광역처리시설 운영사업자, 지역주민 간 협의가 필요하다(2026. 1).



5. 산업재해 및 사고 현황

- 야간작업 중 사고현황은 교통사고 84명(사망 3명), 안전사고 632명(사망 2명), 기타 119명(사망 1명)으로 조사되었고, 산재승인도 교통사고 51명, 안전사고 508명, 기타 110명으로 조사됨
- 특히 안전사고가 교통사고보다 많은 것은 위험요인이 단순 차량 주행 과정이 아니라 폐기물 취급, 적재·배출, 차량 주변 작업 전반에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함
- 주요 사고유형은 불균형·무리한 동작(715건), 넘어짐(612건), 절단·베임·찢림(261건) 등으로 나타남
- 2020년 888건, 2021년 861건 이후 2023년까지 연 800건 이상 안전사고가 지속되었다는 통계를 볼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여전히 고위험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뒷받침함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미화원 야간작업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지방정부 222개
- 조사범위: 2022. 1. 1. ~ 2025. 6. 30.
-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2025. 11월 ~ 2026. 1월)
- 조사내용: 안전사고 인원, 산재승인 여부, 야간작업 여부, 야간작업 사유 등

< 환경미화원 '야간작업' 중 사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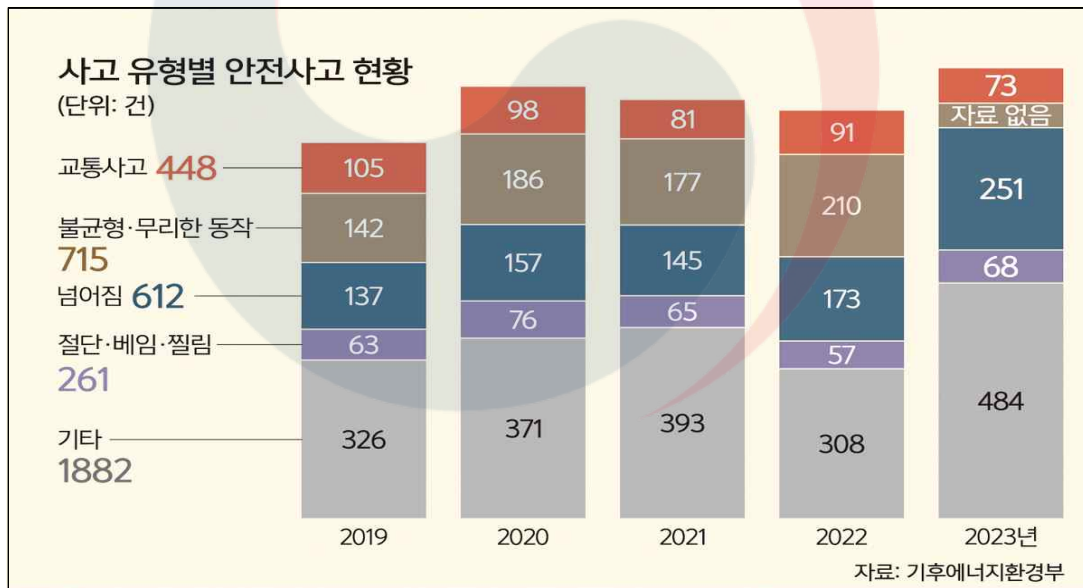
사고 유형	사고 건수	산재승인 건수
교통사고 (사망)	84 (3)	51
안전사고 (사망)	632 (2)	508
기타사고 (사망)	119 (1)	110
합계	835 (6)	669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현황

사고 유형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안전사고 건수	888건	861건	839건	876건	866건
안전점검 '적합' 업체 비율	24.1%	66.4%	70.7%	84.6%	

※ 기후에너지환경부(정혜경 의원실 제공) 자료, 근로복지공단(정혜경 의원실 제공) 자료 재구성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6. 안전점검과 평가 운영체계

- 환경부 평가지침은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음
- 현장평가는 작업자 위생·안전 12점이 포함되며, 세부항목으로 ▲청소차량 안전장비,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휴게실 운영, ▲샤워장 운영,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제시됨
- 실적서류 평가는 ①민원대응, ②인력관리, ③장비관리, ④안전관리, ⑤거버넌스 참여로 구성되며, ④안전관리 항목에는 작업시간, 악천후 작업기준,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포함됨
- 이처럼 중앙정부는 이미 '수거 서비스의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위생 상태'를 제도상 평가요소로 명시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2024. 5. 환경부)

< 표 5 > 평가단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 점(40)		평가장소
1. 수거구역 현장평가	1) 전량수거	5	15	수거지역 현장평가
	2) 정시수거	5		
	3) 청결수거	5		
2. 차량 관리	1) 적재함 밀폐	3	5	차고지 등
	2) 청소차량 세차상태	1		
	3) 청소차량 도색상태	1		
3.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	1) 주차장관리	1	5	
	2) 적 환장 청결	2		
	3) 폐기물 보관	2		
4. 작업자 위생·안전	1) 청소차량 안전장비	4	12	
	2)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4		
	3) 휴게실 운영	2		
	4) 샤워장 운영	2		
5. 작업자 만족도	작업자 설문 등	3	3	



7. 지방정부 조례 운영 현황

-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또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통해 평가기준과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별로 조례의 체계성과 구체성에는 차이가 있음
- 일부 지방정부는 환경부 지침을 준용하거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는 평가실시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거나, 휴게실·샤워실·근로환경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한 곳도 있음
- 따라서 현행제도는 전국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운영 기준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목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1의 기준 따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 나. 가로청소작업
-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사용한 작업
-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7조(평가의 기준 등) ①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한다.

② 평가별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업무 기간 안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9.30.>

④ 제11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5.9.30.>

제15조(대행계약서에의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내용을 대행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8. 입법 동향

- 국회 정혜경의원 대표발의로 2024. 9. 19.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2항 개정안이 환노위에 제출되었고, 2024. 11. 21. 소위원회 상태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2024. 9. 19. 정혜경 의원 대표 발의)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 략)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1.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3.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운영할 것 4.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5. 폭염, 강추위, 폭설, 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고, 작업시간의 조정 및 작업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적용대상,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사항 및 그밖에-----.

○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실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개별 지방정부의 현지 여건과 무관하게 안전기준을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적용하는 등 개정안의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주간 작업 원칙으로 할 경우 보통 아침 시간에 해당하는 공공처리시설 반입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교통 혼잡 및 주민 민원에 따라 작업자의 업무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3인 1조의 경우 청소 작업별·대상 폐기물별 작업방식 및 장비(차량)이 상이함에 따라 준수가 어려운 점이 있어 예외 규정을 고려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부산시, 대구 달서구 등에서는 지방정부별 수거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행 환경부령처럼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 사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Ⅲ 문제점 분석

1. 법령상 원칙과 실제 운영 간 괴리

- 현행 규정은 주간작업과 3인 1조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22개 지방정부 중 106곳이 야간작업(47.7%)을 운영하고 있어, 예외가 원칙을 잠식하고 있음
- 2024년 9월 30일 국회 토론회* 발표된 자료에서도 3인 1조 작업 원칙 준수율이 64.2%로 확인됨
 -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2024.9.30.)
- 이는 법령상 안전기준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지방정부 주간작업 및 야간작업 실태 (단위: 자치단체수) >

구분	기관 수	비율
주간작업	116	52.3%
야간작업	106	47.7%
합계	222	100%

※ 국민권익위원회 222개 지방정부 실태조사 결과(2026.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인 1조 작업원칙 준수 형태

근무조 형태	응답자	비율
3인 1조	122명	64.2%
3인 1조 아님	68명	35.8%
총계	190명	100%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자료(2024.9.30.)

2. 야간작업의 구조적 불가피성과 관리기준 미비

- 야간작업은 교통, 주민민원, 처리시설 반입시간, 업무 효율성, 임금체계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환경미화원들은 야간수당과 작업 효율성을 이유로 야간작업을 찬성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배출시간, 임금 조정 없이는 주간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임(2026. 1.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그럼에도 현재 제도는 야간작업의 허용 사유만을 추상적으로 두고 있을뿐, 작업구간·작업시간·휴게·세척·사고 보고에 대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그 결과 동일한 야간작업이라도 지방정부와 업체별로 안전관리 수준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지방정부에서 폐기물수거 야간작업을 유지하는 이유 >

야간작업 사유	기관 수	비율
교통 불편	36	20.4%
냄새 소음 등 주민불편 최소화	29	16.5%
처리시설 반입 시간 고려	26	14.8%
업무 효율성 고려	12	6.8%
기타(단체협약사항, 행사, 계절요인 등)	30	17.0%
합계	133	100%

※ 국민권익위원회 222개 지방정부 실태조사 결과(2026.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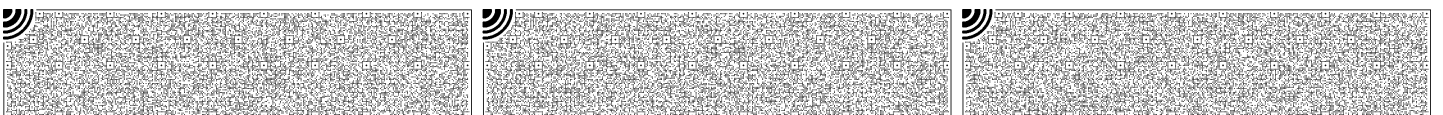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안전점검의 형식화와 실효성 부족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안전점검 적합판정 업체비율이 24.1%에서 84.6%로 상승하였으나, 안전사고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연 800건 이상 유지되고 있음
- 이는 안전점검 적합 판정이 실제 현장 안전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서면점검이나 업체 보고 확인에 그치고 불시점검이 거의 없어 야간작업 현장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 '양호' 판정 후 4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음
- 2025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운행일지에 사고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해당 구청의 사전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됨
- 이는 점검과 기록, 감독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중대사고 예방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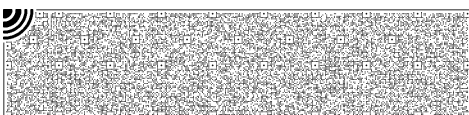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현황					
사고 유형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안전사고 건수	888건	861건	839건	876건	866건
안전점검 '적합' 업체 비율	24.1%	66.4%	70.7%	84.6%	

※ 기후에너지환경부(정혜경 의원실 제공) 자료, 근로복지공단(정혜경 의원실 제공) 자료 재구성



지방정부별 안전점검 실태(2025년 기준)

시군별	안전점검 명칭(횟수)	근거법령	안전점검사항	비고
강원도 □□시	중대산업재해 안전 의무 이행사항 점검(연 2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등	·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 안전보건 이행실태	용역
△△광역시 남구	안전기준 이행실태(연2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등	· 안전관리기준 이행 실태	용역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안전보건 이행실태	용역
○○시도시 관리공단	정기 위험성 평가 관련 현장점검(연 1회)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제3항	· 안전보건 이행실태	직영
	청소차량 특별점검(연2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 청소차량 등 안전 점검	
	청소 현장점검(연2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 청소차량 및 환경 미화원 안전 점검	
	안전점검의 날(월1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생활폐기물 관련 안전 실태 점검	
△△광역시 동구	중대 산업재해 안전 의무 이행사항 점검(연2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등	· 안전보건 이행실태 전반	용역
서울특별시 ##구	안전보건협의회(월1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산업안전 이행실태 점검 등	용역
	용역업체 자체 교육 및 점검 (월1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등	· 정기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시	정기 위험성평가(연2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등	· 안전보건 이행실태 전반	용역



언론보도 사례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 후미에 매달린 50대 환경미화원이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당일, 차량운행일지에는 **사고 관련 사항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25.9.30. 노컷뉴스)

강서구청은 불과 4개월 전 '작업자가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탈 시 운행을 금지한다'는 수칙 등 모든 안전점검 항목이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의원이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급사업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에 따르면 세부 점검 항목 중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금지 준수 여부'에 '**양호**' 판정이 내려졌다(2025.9.26. 노컷뉴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 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

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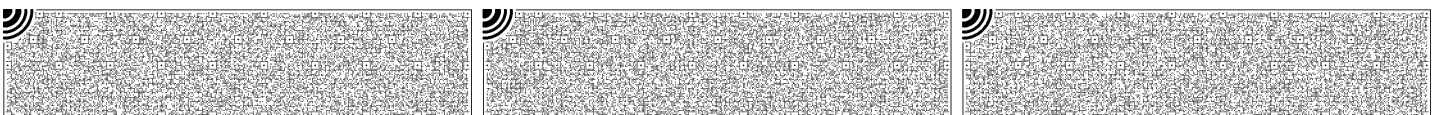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4. 민간위탁 구조에 따른 책임 분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위탁 비중이 크고, 특히 야간 작업은 주로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구조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지방정부와 대행업체 간 분산되며, 실제 사고 발생 시 감독책임과 고용책임이 분절될 가능성이 있음
- 실무자 면담 결과, 야간수거작업은 주로 용역업체가 실시하고, 안전사고도 대부분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집중된다고 진술하였음
- 이는 단순히 개별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평가·감독을 포함한 위탁운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함

< 지방정부 야간작업 운영 방식과 종사자 규모 >

구분	지방정부 수	인력 규모
직영	56개	9,695명 (공무직, 기간제 등)
용역	86개	23,024명 (755개 업체 근로자)
직영 및 용역 병행	80개	직영 용역 인원수에 기포함
합계	222개	32,719명



5. 휴식권 · 위생권 보장 미흡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 오염물질, 침출수, 악취, 분진 등에 노출되는 작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실과 샤워실은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9월 30일 국회 토론회 발표에서도 휴게공간 확보율은 27%, 화장실·위생시설 확보율은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환경부 평가지침은 현장평가 항목에 휴게실 운영과 샤워장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나,
 - 각 지방정부 조례와 계약서에 이를 필수 운영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설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설치·관리기준이 이미 존재하므로, 생활폐기물 분야에서도 최소한의 휴게·위생기준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근무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지방정부나 사업장 공식 지정) >

휴게공간 유무	응답(명)	비율
있다	53	27.0%
없다	143	73.0%
합계	196	100%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자료(2024.9.30.)

< 근무 중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위생시설(지방정부나 사업장 공식 지정) >

화장실 및 위생시설 유무	응답(명)	비율
있다	72	36.7%
없다	124	63.3%
합계	196	100%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자료(2024.9.30.)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사례

가로 작업원은 비와 오물에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 그대로 일하다가 자가용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집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상차원들은 제대로 분리 수거되지 않은 생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을 상차하다가 각종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며...(2025. 11. 11. 오마이뉴스)

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었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평가'가 2021년 **수행사업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각 지방정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국내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 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I) 163쪽,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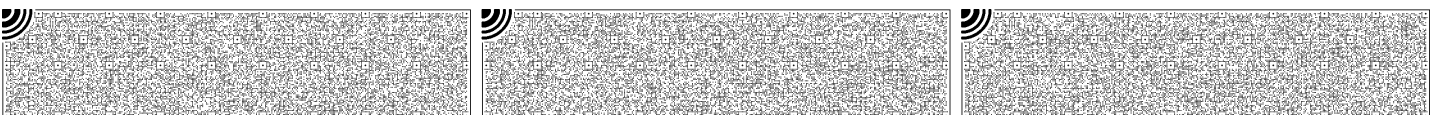
라. 텔레마케터

마. 배달원

바. 청소 관련 종사자

사. 아파트 경비원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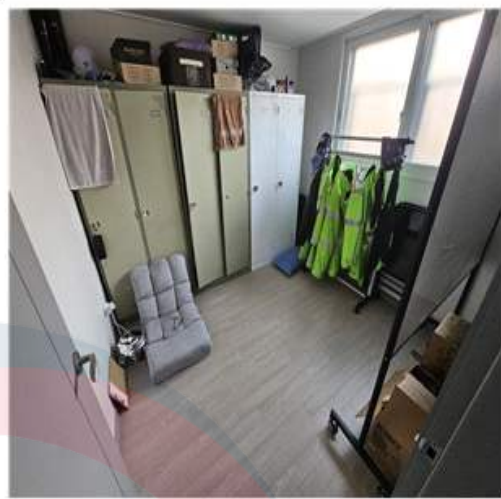
(이하 생략)

휴게시설 설치·운영 우수사례

○○○시 사례



내 부 1



내부 2



샤워실·화장실



전경

6.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실효성 부족

- 환경부 평가지침은 평가결과를 등급화하여 포상금, 가점, 개선명령, 영업제한 등에 활용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평가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계약·입찰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음
- 감사사례에서도 대행실적 평가 미 실시, 결과 미공개, 결격사유 조회 누락, 지도·감독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있음
- 따라서 평가가 계약, 재계약 여부를 실질적으로 좌우하지 못하면 업체입장에서 안전·근무환경에 대한 선제적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24.5. 환경부)

○ 평가결과 적용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업체의 대행실적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등급화하고,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

등급	평가점수	활용(예)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탁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개선 조건부 입찰
부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영업정지

감사 지적 사례

생활폐기물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2024년도 감사사례집, 000구)

대행비용 지출내역 미공개 및 대행자의 결격사유 미조회 (2016년 감사사례집,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 점검 미 실시 (2025년 감사결과, ○○○구)

< 지방정부 생활폐기물대행업체 평가조례 분석: 평가 및 결과적용 >

구분	평가구조	휴게·샤워	계약연계	조치사항 계약명시
환경부	주민만족도30+현장평가40+서류평가30 구조	휴게실·샤워장 운영 명시 (평가항목 포함 배점기준 제시)	평가결과 등급화 후 계약·입찰·포상·연계 가능	
○○○	주민만족도+현장+서류평가 구조 (배점 규정 없음)	휴게실·샤워장 운영 명시 하지 않음	등급화 규정 미비,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의무규정 (대행계약 체결 때 명시해야 한다)
○○○○	주민만족도30+현장평가40+서류평가30 구조	휴게실·샤워장 운영 평가항목 포함	평가결과 등급화, 입찰가점, 조건부 입찰, 영업정지	재량규정 (대행계약에 명시할 수 있다)
○○○○	주민만족도30+현장평가40+서류평가30 구조	환경미화원 휴게실 평가 일부포함(배점 기준 없음)	평가결과 등급화, 표창, 계약금 1,000만원 차감, 영업정지, 계약해지	명시 규정 없음
○○○○	주민만족도30+현장평가40+서류평가30 구조	휴게실·샤워장운영 평가항목 (규정) 없음	평가결과 등급화, 표창, 개선명령,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의무규정 (대행계약 체결 때 명시해야 한다)
○○○○	주민만족도+현장+서류평가 구조 (배점 규정 없음) 평가 실시 규정만 존재	휴게실·샤워장 운영 평가항목 (규정) 없음	평가결과 등급화, 표창, 계약기간 연장, 사업구역 축소, 입찰제한, 계약해지	재량규정 (대행계약 체결 때 미리 명시할 수 있다)
○○○○	주민만족도30+현장평가40+서류평가30 구조	환경미화원 휴게실 평가항목 포함(배점 기준 없음)	평가결과 등급화, 표창, 관리감독 강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의무규정 (대행계약 체결 때 명시해야 한다)

※ 지방정부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는 휴게실·샤워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음(2026. 4.)

7. 주민 생활권과 종사자 보호의 구조적 충돌

- 새벽 1시~3시간대 음식물·생활폐기물 수거 소음과 악취로 인해 수면권 침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됨
- 이는 야간작업이 단지 작업자 측 안전 문제만이 아니라 주민 생활권과 직접 충돌하는 정책문제임을 보여줌
- 반면 주간 전환을 강행할 경우에는 교통혼잡, 처리시설 반영 차질, 악취 민원,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이해만을 우선할 수 없는 구조적 조정과제이며, 예측가능하고 균형잡힌 제도 운영기준이 필요함

민원 사례

수거시간 변경 민원으로 잠시 수거 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새벽 3시 30분부터 음식물을 수거해서** 조용하게 지내기 어려우니 오전 6시부터 주간 수거로 변경해 달라(2024. 11. 국민신문고 민원)

서울 ○○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심야 시간인 오전 1시 전후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 **소음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수면이 어렵다**. 00시는 작년에 주간으로 수거 시간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개선 좀 해달라(2021. 6. 민원)

부산 ○○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수거업체 대형차량 운행 및 집게 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구민의 잠잘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2025.1. 국민신문고 민원)

실무자 현장면담 사례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반입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222개 지방정부 중 26개 지방정부에서 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2026. 1. 권익위 실태조사)

00시 등 일부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야간작업 수당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야간작업을 명시하도록 요청한 경우도 있었음(2026. 1. 권익위 실태조사)

언론보도 사례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이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에 작업중지권 규정에 따라 일을 중지하는 비율은 직영 소속 미화원의 1/3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118개 대행업체 중 기상 악화로 실제 작업을 중단한 곳은 50곳(42%)이다. 대행업체가 악천후에도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민원으로 인한 입찰 불이익 염려하기 때문이다(2025.12.18. 세계일보)

IV 개선방안

1. 안전기준 실효성 강화

- 현행처럼 야간작업의 예외를 허용하되, '방치하지 않는 관리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작업시간, 작업구간, 안전관리 방법, 휴게 및 위생조치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확인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3. (생략)

(제4호 신설안 예시)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작업구간, 안전관리 방법, 휴게 및 위생 조치가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확인하여야 한다.

2. 야간작업 관리체계 구축

- 대행 계약서에 작업구간, 시간, 인력배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전계획 제출 명문화

3. 휴게실 · 샤워장 설치 운영 의무화

- 환경부 평가지침에 이미 휴게실·샤워장 운영을 평가항목에 두고 있는 만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법령 및 조례, 계약서에 명시적 의무로 반영하는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이 존재하므로, 생활폐기물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법령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신설안 예시)

제14조의5 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휴게시설, 세면시설 및 샤워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행계약의 평가·갱신 및 지도·감독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준조례안 예시

제00조(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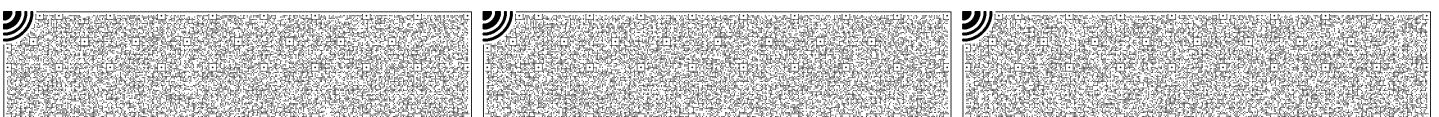
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및 위생 보호를 위하여 휴게실, 샤워실 및 세면시설, 작업복 보관시설과 세탁·건조 설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고려사항: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사례

가로 작업원은 비와 오물에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 그대로 일하다가 자가용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집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상차원들은 제대로 분리 수거되지 않은 생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을 상차하다가 각종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며...(2025. 11. 11. 오마이뉴스)

2019,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었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평가'가 2021년 수행사업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각 지방정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국내산업별/직종별 특성과 사망 사고 발생 위험분석 연구(I) 163쪽, 산업안전보건연구원)



4. 대행업체 평가체계 운영기준 강화

- 환경부 평가지침을 유지하되, 현장평가 중 작업자 위생·안전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계약연장·해지, 입찰참여, 예산 반영과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조례에 명시
- 특히 휴게실·샤워장 미설치 또는 형식적 운영 시 감점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대상이 되도록 운영기준 강화

평가등급 활용방안 예시	
평가 등급	활용방안
탁월 · 우수	포상, 가점, 계약 우대
보통	개선 권고
미흡	시정명령, 조건부 재계약
부진	계약해지 검토, 입찰 제한

5. 안전점검 체계 개선

-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 점검결과 형식적 적합 판정에 따른 사고의 지속적 발생 간 괴리를 줄이려는 조치 필요

현장 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기 · 서류점검 중심	불시 현장점검 병행
업체 제출자료 의존	GPS · 운행일지 · 현장사진 대조
관리자 중심 확인	환경미화원 3인 이상 직접 면담 포함
사후관리 미흡	사고 발생업체 특별점검 및 안전교육 의무화



6. 민간위탁 구조 개선과 책임 명확화

- 지방정부와 대행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보고, 휴게시설 운영, 안전교육, 평가 미흡시 시정기한과 제재 사항 명시

7. 원가산정 방법 개선

- 휴게실·샤워실뿐만 아니라 세탁·건조설비, 안전교육, 위생용품 등은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발생하므로 원가 산정 단계에서 필수 검토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목에 명확하게 제시

현행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경비

다. 경비의 세비목

9) 지급사용료

가)사용료 지급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사용되는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한한다.

다)환경미화원에게 제공되는 **휴게실 사용료** 산정은 해당 휴게실 공시지가에 1천분의 25의 비율과 휴게실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휴게실 면적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0)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가)**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의 전력비, 수도광열비를 말하며, 사무실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할 경우 적산전력계 구분 설치 등을 통해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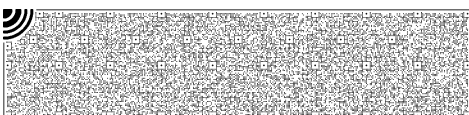
5. 기타 유의사항

나. 주간작업 전환 등 근무조건 변화로 인하여 직접노무비의 급격한 하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향 금액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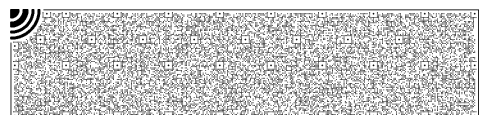
V 조치사항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1. 안전기준 실효성 강화	○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작업시간, 작업구간, 안전관리 방법, 휴게 및 위생조치 등을 포함하는 관리 근거 마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후에너지 환경부 (’27. 12.)
2. 야간작업 관리체계 구축	○ 대행 계약서에 작업구간, 작업시간,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전계획 제출 명문화	지방정부 (’27. 12.)
3. 휴게실·샤워장 설치 운영 의무화	○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법령 및 조례에 휴게실·샤워장 운영 설치 근거 마련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조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방정부 (’27. 12.)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4. 대행업체 평가체계 운영 기준 강화	○ 현장평가 중 휴게실·샤워장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계약과 연계하도록 조례에 명시 ※ 「조례」 일부개정	지방정부 (’27. 12.)
5. 안전점검 체계 개선	○ 현장점검 및 특별점검, 안전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지방정부 (’27. 12.)
6. 민간위탁 구조 개선과 책임 명확화	○ 지방정부와 대행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보고, 휴게시설 운영, 안전교육, 평가 미흡시 시정기한과 제재 사항 명시	지방정부 (’27. 12.)
7. 원가산정 방법 개선	○ 휴게실 및 샤워실뿐만 아니라 세탁·건조설비, 안전 교육, 위생용품 등은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발생하므로 원가 산정 단계에서 필수 검토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목에 명확하게 제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기후에너지 환경부 (’27. 12.)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6월 15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최 진 영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홍 주

위 원 이 태 한

위 원 김 바 올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정 본 입 니 다 .

2026. 6. 15.

국 민 권 익 위 원

